

2005. 5.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產業建設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2005. 5. 4	2005. 5. 7	2005. 5. 10	2005. 5. 10	지역개발과장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교통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 및 적립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함(안 제2조)
-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안 제3조)

-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조례에서 정한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하고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함(안 제7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종전의 「충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충주시재난 관리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로 통합 운용함(안 부칙)

나.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3조제11호)
- 내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고자

-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2005년 5월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8천 66만 7천원, 재해대책 기금으로 16억 5천 9백 5만 3천원 등 모두 22억 3천 9백 72만원의 재난 관련 기금이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금의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법정 적립금이나 여유자금·유휴성 자금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운용수입을 극대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달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성안된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나 필요성,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기존 단독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단독주택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간의 친화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단독주택과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으로 명시하는 것은 신축하는 단독주택(주차장 확보 의무가 업는 50m² 이하의 단독주택)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한도액에 있어서도 자치 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충주시의 경우(예정) :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50%로 한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2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액의 50만원을 추가하여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

※대전시의 경우 :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보조금도 시비 50%, 구비 50%로 함)

- 서울시의 예를 든다면 지난해 9월 자치구별로 시범단지를 결성해 시작한 ‘그린파킹(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가구마다 55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 사업 결과 7개 구 23개 지역 1,000여 가구에 1,46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마련했고, 최근 주민 호응도가 높은 30개 지역을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편임
- 서울시는 2006년까지 전체 주택가의 50%를, 2012년까지는 모든 주택가에 담장 없는 ‘녹색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으로는 담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치안 불안감인데,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구의 주민의 원활 경우 지구별로 10~15대의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가. 중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안

▶ 질의 : 분리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이유는?

- 답변 :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게 되었음

▶ 질의 : 재난관리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우리가 예치한 금융기관은?

- 답변 : 이자율이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조흥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음

나. 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내집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면지역도 해당되는지?

- 답변 : 면단위 밀집지역도 해당되지만 우선 도심지 동 밀집지역부터 추진한 후 면단위 지역은 검토 추진하겠음

▶ 질의 : 2대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보조 지원액은?

- 답변 : 한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2대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1부
나.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